



## ‘인쇄를 사랑하는 사람들 네모’ 출범 남원호 이사장, 대표이사 선임

대·중소기업 상생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남원호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은 ‘동반성장’의 하나로 서울형 사회적기업인 ‘인쇄를 사랑하는 사람들네모(주)(이하 네모)’ 설립에 앞장섰다. 지난 8월 8일 서울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네모 창립총회가 열렸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 남원호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대표이사 선출 개인출자 1인당 20만원 동일 ... 145명 출자

네모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태복)는 지난 8월 8일 서울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안태복 설립추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IT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솔루션 업체들과 국가유공자 등 각종 보훈단체와 수많은 장애인 단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네모를 통해 올바른 거래질서 문화 및 상거래 정착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네모가 우리 인쇄업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롤 모델이 되고, 거래질서 확립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호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인쇄는 디자인에 서부터 후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별로 협업을 통해서만 하나의 인쇄물로 탄생되는 협업 산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디자인이나 인쇄, 후가공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무너져

가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서울인쇄조합과 서울인쇄센터가 중심이 되고 인쇄를 아끼는 여러분들이 모여 네모를 설립하게 됐다”라며 “서울인쇄조합은 네모를 통해 인쇄업계가 영역침식에 휘둘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의안건으로 논의된 제1호 의안 정관 제정(안) 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제2호 의안으로 상정된 임원선출에서는 대표이사로 남원호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이, 감사로 서울인쇄조합 고문변호사인 권성원 변호사가 선출됐으며, 이사선출은 남원호 대표이사에게 위임됐다. 기타사항으로는 인쇄 및 후가공 작업을 수행할 연계기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네모’는 생산자, 소비자, 인쇄전공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출자로 1인당 20만원으로 동일하다. 8월 8일 현재 서울인쇄조합 2억원 외에 강남철, 강명자, 강승진, 강안승, 강용석 등 총 145명이 개인출자자로 참여했다.

### 거래질서 개선·유통구조 합리화 도모

남원호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이 서울조합 이사장으로 출마하면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던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 설립'이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 '네모'로 구체화됐다.

'네모'는 인쇄산업의 거래질서 개선과 유통 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인쇄산업 종사자들의 권익 신장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실업자, 노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인쇄산업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쇄업 ▲국·내외 인쇄 유통업, 해외 인쇄물 수출 및 무역업 ▲인쇄관련 기술과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인쇄업계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인쇄관련 서비스 제공 ▲인쇄물 및 인쇄기술 프로그램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실업자, 노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제공 ▲사회 서비스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 참여 ▲기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일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네모는 서울특별시에서 본점을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9만1520주로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만2880주로 제한했다. 네모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주권은 1주권, 10주권, 20주권, 100주권 등 총 4종이며, 개인투자자는 균등하게 1인당 20주만 매입할 수 있다.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및 신탁재산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를 따른다.

주주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주주로 구성하며,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하고,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청구할 때 소집된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주주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주주총회에서는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합병,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의 승인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승인 ▲감사보고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주요사항 및 대표이사가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근로자 대표 1인 이상, 관련단체 전문가 또는 연계기업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이사회 의장은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하며,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기본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지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총회 위임사항 ▲기타 주요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사업 및 법인 해산시에는 주주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부채를 해소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했다.☞

문의 \_ 02-335-8631 (내선158 오혜경 과장)

홈페이지 \_ www.nemocard.co.kr



1. 네모 대표이사로 선임된 남원호 서울인쇄조합이사장 2. 안태복 네모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3. 네모 창립총회에 참가한 출자자들